

의안번호	2213213
의 퇴 인	김영호의원
회 답 일	2025.10.13.
추계번호	25D5286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의4 (원격영상출석) 신설	제5조제1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석할 장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원격영상출석(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한다)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2	안 제6조 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	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안전심의와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로 확대하고 증인 불출석 시, 증인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발휘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를 질병이나 중대한 신체부상, 천재지변 등 재해로 국회출입이 불가능한 경우,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함	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5조의4 (원격영상출석) 신설	• 미대상 –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증인·감정인·참고인의 원격영상출석을 지원하는 영상회의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
2	안 제6조 (증인에 대한 동행명령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

- 최근 5년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회의건수는 817건이며, 동행명령건수는 모두 60회임

[표 1]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회의 및 동행명령 현황

(단위: 회)

년도	회의 건수			동행명령 건수		
	국정감사	국정조사	합계	국정감사	국정조사	
2020	152	0	152	1	0	1
2021	156	0	156	2	0	2
2022	167	9	176	8	5	13
2023	155	0	155	3	0	3
2024	167	11	178	30	11	41
총합	797	20	817	44	16	60

자료: 국회사무처

- 개정안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뿐만 아니라 안건심의 및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로 확대하고 증인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권 발휘의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를 질병이나 중대한 신체부상, 천재지변 등 재해로 국회출입이 불가능한 경우,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임
- 개정안에 따라 동행명령권을 적용할 수 있는 회의가 많아지고 증인이 불출석 시, 동행명령 예외로 인정되는 사유가 명확해짐에 따라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이 집행되는 건수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수가 확대¹⁾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개정안에 따라 동행명령권 예상 집행 규모 및 동행명령을 집행하기 위한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수의 확대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1) 현재 동행명령권 발부 시, 위원회 직원이 동행명령을 집행하고 있으며, 필요 시 경위가 동행하고 있음

IV. 부대의견

☐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수연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수연	02-6788-4667	syjeon@assembly.go.kr